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개별소비세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,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.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·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20. ~ 2022. 6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“2022년 7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, “193원”을 “176.4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)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의2(탄력세율) ①법 제1조제 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 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  략)</p> <p>3.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 는 물품: 킬로그램당 275원. 다만, <u>2022년 7월 31일</u>까지는 킬로그램당 <u>193원</u>으로 한다.</p> <p>4. ~ 6. (생   략)</p> <p>② · ③ (생   략)</p>	<p>제2조의2(탄력세율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. 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<u>176.4원</u>-----.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